

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  
2006.9.4~9.15(12일간)

# 심사보고서

□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#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9. 15.

기획행정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년 8월 28일  
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5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기획행정위원회(2006.9.5)  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· 토론, 심사의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곽연창)

### 1. 제안이유

고액 · 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, 체납자 정보공개개상자 심의를 위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실설(안 제9조의3)

○ 대상 : 1억원이상 고액 · 상습 체납자

나.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9조의4)

○ 구성 : 위원장(행정부지사) 포함 9인 이내

○ 기능 : 체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)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2항에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국세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·상습 지방세 체납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단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없습니다.
- 다만 정보공개대상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)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시장·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·군에 체납액

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 공개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대상자 범위에 대한 제외규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, 공개대상명단 선정기준일, 공개시기,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판결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#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8 월 28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고액·상습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, 체납자 정보공개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(신설, 안 제9조의 3 )

- 대상 : 1억원 이상 고액 · 상습 체납자

### 나. 지방세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설치(신설, 안 제9조의 4 )

- 구성 : 위원장 포함 9인 이내
- 기능 : 체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조례 제 17 호

##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(도세 및 시·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)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·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.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·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의4(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) ①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

2.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

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로 임명되거나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신 설>	<p><b>제9조의3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</b></p> <p>①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도세 및 시·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. 대한민국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·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.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·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신 설>	<p><b>제9조의4(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)</b> ①</p> <p>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</p>

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

2.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

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로 임명되거나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세법

제69조의 2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(이하 "체납정보"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,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.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2005. 12.

## □ 지방세법시행령

제52조의2 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 
서 "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체납액(가산금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
2.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,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
2.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

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,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·상호(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), 연령, 직업, 주소, 체납액의 세목·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,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 할 수 있다.<본조신설 2005.12.31>